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3. 16  
시민보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2월 6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12월 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1995년 3월 16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조남성)

#### 가. 제안이유

- 자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준칙 시달에 따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규정 삭제
-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첨부서류 간소화 반영
- 수수료 납부의 승계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징수로 승계부여 상실
- 분뇨 관련 영업허가시 시장협의를 삭제 처리기일 단축

#### 나. 주요골자

- 공중변소의 민간위탁 삭제(안 제19조)
-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 첨부서류 중 신원증명서 삭제로 서류간소화(안 제8조)
- 수수료의 납부 승계는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직접징수로 승계부여 상실(안 제15조)
- 분뇨 관련 영업허가시 시장협의를 삭제하여 기일단축(안 제1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공중화장실 설치시 허가에 따른 첨부서류가 행정규제의 완화로 간소화하고,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삭제하여 민원처리기일을 단축하는 등의 개정안이 되겠음.

1. 조례 제15조(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의 삭제는 수수료 납부의 승계를 대행업체에서 직접징수로 승계부여를 상실하는 것이며,

제19조(공중변소의 민간위탁)의 삭제는 민간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구에서 직접처리하므로 삭제하는 내용임.

2. 조례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와 제17조(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의 내용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2항 1호에 신고인의 신원증명서를 삭제하므로 행정을 간소화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므로 제출된 개정안은 원안가결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4
----------	-----

제출년월일 : 1994. 1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자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준칙 시달에 따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규정 삭제
-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첨부서류 간소화 반영
- 수수료 납부의 승계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징수로 승계부여 상실
- 분뇨 관련 영업허가시 시장협의를 삭제 처리 기일 단축

### 2. 주요내용

- 공중변소의 민간위탁 삭제(안 제19조)
-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 첨부서류 중 신원증명서 삭제로 서류간소화(안 제8조)
- 수수료의 납부 승계는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직접징수로 승계부여 상실(안 제15조)
- 분뇨 관련 영업허가시 시장협의를 삭제하여 기일단축(안 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

한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

한법 시행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

한법 시행규칙

나. 예산근거 : 해당없음

다. 합의 : 의견없음

라. 기타 : 개정조례안(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  
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  
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 제2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  
로 하며, 제8조 제3항중 “장비 및 기술능력을 고  
려하여” 다음에 “시장협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15조(수수료 납무 의무의 승계)를 삭제”한다.

제17조(분뇨관련 영업허가) 제1항중 “요건을 고  
려하여” 다음에 “시장협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5조로”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하  
고, “제18조를 제17조로”한다.

“제19조(공중변소의 민간위탁)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제18조로”하고 “제21조를 제19조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